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29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경숙·신장식·문정복

황운하 · 김준혁 · 김준형

서왕진 · 진선미 · 백승아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의1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13(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진흥시책에는 독서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신 설>	제60조의12(학교의 독서 문화 진
	흥)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u>한다.</u>
	② 진흥시책에는 독서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
	<u>한 사항</u>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 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 다.
-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 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 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 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